

구미시공원녹지기본계획(안)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 이유

- 2005년 기준 「도시공원법」이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로 개정됨에 따라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이 의무화 되고, 개발 제한 구역의 조정 등으로 녹지의 훼손과 파괴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연자원의 확보를 위해서는 구미시의 녹지축 설정 및 보전, 관리의 방향이 조기에 설정되어야 하며
- 구미시의 자연·인문·역사·문화·환경 등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감안하여 공원녹지의 확충·관리·이용·보전에 관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속가능하게 도시환경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공원녹지의 구조적인 틀을 제시하는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

3. 주요내용

- ☐ 건 명 : 구미시 공원녹지기본계획
- ☐ 공간적 범위 (도시공원 176개소, 녹지 110개소 등)
 - 공원녹지기본계획 범위 : 구미시 공원녹지지역 (약 37.81km²)
 - 가로수기본계획 범위 : 가로수 관리지역(가로수식재 가능도로)

□ 시간적 범위

○ 기준연도 : 2006년

○ 목표연도 : 2020년

4. 참고사항

○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 및 제8조

5. 검토의견

○ 본 의견제시의 건은 기존의 「도시공원법」이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(전부개정 2005. 3. 31 법률 제7476호)로 개정되고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이 의무화됨에 따라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사항으로

○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 및 지속 가능한 녹지 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공원녹지의 종합적 배치, 구미시의 녹지축 설정, 공원녹지의 보전·관리·이용 및 공원녹지의 기본방향 설정과 중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본 계획안과 같이 수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